

노부모부양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서류	○		신분증 (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)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2020.12.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발급 구분: 본인발급, 용도: 아파트 계약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※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[발급용도(직접작성): 서류제출 및 계약 / 제출처: 두산건설(주)]
	○		인감도장	본인	•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일치 확인,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,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“ 전체포함 ”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번호),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“ 상세 ”로 발급 (배우자 및 자녀, 직계존속 등 본인과의 관계확인)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혼인신고일 등 혼인 관계 확인(본인 및 배우자 포함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번호)를 포함하여 “ 상세 ”로 발급)
공동서류 (해당자)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•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(단신부업) 해외 체류 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• 기록대조일: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,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※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전체포함)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(분리세대)에 한하여,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, 세대원 포함) 등을 포함하여 “ 전체포함 ”으로 발급
	○		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	배우자	•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/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(주택소유여부 확인) ※ 특별공급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청약이 불가하며,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 전 외국인 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(※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주택소유여부 확인 불가로 부적격될 수 있음)
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	○		복무확인서	본인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(※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)
	○		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	본인	• 견본주택 비치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•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, “상세”로 발급 (※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시만 인정) •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직계 존속	•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(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) ※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(3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	•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전체포함)		•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변동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“전체포함”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	•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-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-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: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•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※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 ~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	•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하여 “상세”로 발급
	○	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		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(진료개시일,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) -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(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)
	○		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	본인	•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• 견본주택에 비치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(별지 제6호서식)
부적격 통보를 받은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본인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, 무허가건물확인서(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항에 따른 무허가 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), 공동주택자격확인서, 철거예정증명서,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대리인 신청 시 (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)	○		위임장	본인	•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(당사 견본주택 비치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용도: 아파트 당첨자 서류제출 위임용(본인발급용),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(서명인증서)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※ 대리인 접수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
	○		신분증(※ 모바일 신분증 불가) 및 도장	대리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(재외 동포 :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/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) ※ 2020.12.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상기 제출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.08.29(금) 이후 발행분**에 한합니다. ※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전체)등을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합니다.
 ※ **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** 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 ※ 상기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, **반드시 승인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**